2021년 스포츠 분야의 이슈는?



김대희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교수
법학 전공
스포츠법, 체육정책 · 제도개선에 관심
wave@pknu.ac.kr

들어가며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추었던 2021년도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의 일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비대면'으로 그 특징이 압축된 새로운 시대가 기존의 산업구조와 국제질서를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 변화는 앞으로도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스포츠분야 역시 모든 경기가 취소되거나, 열리더라도 무관중으로 개최되고, 체육시설의 폐쇄 등으



출처: shutterstock

로 스포츠에 대한 참여방식이 변화되었고, 골프나 낚시 등 실외 스포츠의 참여가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 속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2021년 스포츠분야의 이슈가 무엇이 있었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되돌아 보고자 한다.

스포츠 인권보호 강화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국민체육진흥법」개정 ('20. 8. 18.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법령은 그동안 성과 중심의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국위선양'을 법의 목적에서 삭제하고 불공정 ·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 · 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 조사, 신고자 · 피해자 보호 등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및 체육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는 체육계 인권침해 · 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때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 · 보도 · 누설해서는 안 되며 신고의 방해, 취소 강요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도 금지되었다.

신고자 · 피해자(이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곧바로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보호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기관 · 단체에 피신고인과의 물리적 분리 또는 접촉 금지, 피신고인의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시적 인권침해 감시 확대 및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계 현장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인권감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훈련시설 내 훈련장, 지도자실, 복도 · 출입문, 식당 등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체육지도자가 아닌 선수관리담당자도 체육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비공식 인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성)폭력을 가하거나 부정 · 비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까지 체육지도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범위도 확대하였다.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프로스포츠에서 유명선수들의 학생 시절 학교폭력 등과 관련된 학교폭력 선수는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2021년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치유 지원, 2달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제재기준 마련, ▲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처벌로 경각심 제고, 현장 직접 점검 강화, ▲ 합리적 실적 평가체계 구축, 지속적 · 의무적 인권의식 향상 교육 확대 및 학교 현장에서의 스포츠과학 훈련방식을 확산하고 지원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제도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21. 3. 1. 이후 발생 사안)을 받은 후 일정기간(예: 전학의 경우 12개월)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프로스포츠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출처: shutterstock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스포츠클럽법」 제정

2021년 6월 15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연계된 선순환의 선진 스포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 ·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스포츠클럽법」 제정을 통해 앞으로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 연령 · 지역 · 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등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프로스포츠 및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도입 등

프로스포츠선수 및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종목별 5개 선수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 선수 · 구단의 의무를 제시하고, ▲ 계약기간, 보수, 비용, 용구 · 용품, 부상 · 질병,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분쟁 등 선수계약의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정했다. ▲ 연맹별 규약에서 정한 웨이버(계약기간 중 구단의 선수에 대한 권리 포기),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등 선수 신분이 변동되는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 현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용 표준계약서와 자유계약(프리랜서) 표준계약서 2종으로 마련되었다. 근로자용 표준계약서는 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 형태이고, 비전속용 표준계약서는 선수들이 자유계약(프리랜서) 형태로 실업팀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와 훈련 참가, 기타 영리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와 수익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표준계약서 주요내용으로는 ▲ 계약 당자사 명시, ▲ 계약기간 및 효력, ▲업무, 과업의 범위, ▲ 계약금액,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손해배상 관련 사항, ▲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자용) 등이 있다.

특히,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사용자가 선수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선수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임의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도록 계약 변경 · 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는 등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916곳, 선수 6,000여 명에게 적용되어 선수의 권익보호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친화적 스포츠환경 조성 및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 체계 마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 명단 공개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정지) 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 체육단체와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등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이수 의무, ▲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의 합숙훈련 선택의 자유 보장,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 및 준수 의무, ▲ 스포츠 비리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징계정보시스템 등록 대상 확대 등을 인권친화적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시행되었다.

또한, 민선 2020년 1월부터 지방체육회가 선출직 회장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



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체육회에 대한 감독, 감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여 예산집행과 사업관리 등 조직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에 따른 민선 지방체육회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중심의 자율적인 체육단체 운영의 법적기반을 확보하였다.

2020 도쿄올림픽 및 2020 도쿄패럴림픽 개최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2020도쿄올림픽이 개최되었다. 당초 2020년 7월 24일에서 8월 9일 사이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개최가 2021년으로 연기되었다. 2021년에 개최되었지만, 비용 등 문제로 인하여 대회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전 세계적인 대유행 중 열렸던 첫 올림픽이자 근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홀수년도에 개최된 하계올림픽이었다.

도쿄올림픽의 경우 우리나라는 총 29개 종목 238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여 종합순위 16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도쿄패럴림픽에 총 14개 종목 86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를 획득하여 종합순위 41위를 기록하였다.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현수막이 대한민국 선수단 선수촌에 게시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헌장 제50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표현금지에 위반



된다는 지적을 받아 현수막을 철거하였으며,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한 것과, 욱일기 문제 등으로 일본과 마찰이 있었으며, 욱일기 사용도 올림픽헌장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을 약속하여 상호합의하였다고 대한체육회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래 스포츠정책을 선도할「스포츠기본법」및「체육인 복지법」제정

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전문 체육인이 생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국가 체육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러한 국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어주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복지 증진 등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정책을 선도할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다.

특히 그간 체육분야에서 사실상 기본법의 역할을 해 온「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권리 보장, 기본 이념 등 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할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또한 체육 관계법령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입법됨에 따라 법령 간 체계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틀에서 여러 개별법과 정책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으며, 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4차 권고사항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스포츠기본법」제정을 통해 스포츠가 체육이 가진 일반적 의미인 '체(體)를 육성하는 교육'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문화활동임을 강조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개인의 성취와 문화 향유를 중시하는 현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였다. 특히 국민 누구나 어떠한 차별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권적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그동안의 성과중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참여중심의 스포츠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 모두가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복지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체육인 복지법」 제정으로 체육인들은 자신의 활동 성과에 대한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불이익에 대한 위협이나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체육인들의 활동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체육인은 직업 특성상 젊은 연령의 은퇴자가 많고 은퇴 후 구직활동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문체부는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취 · 창업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등의 사회참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육인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인생 이모작'의 교두보로 활용함으로써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을 비롯하여 「스포츠기본법」, 「체육인 복지법」 등을 통해 미래 스포츠정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 체육인들의 안정적 활동환경 조성과 스포츠활동 수요 거점으로서의 스포츠클럽 활성화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국민의 스포츠권 향유와 이를 통해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진정한 법제도적인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기본법」은 2022년 2월 11일, 「체육인 복지법」은 2022년 8월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